

# 신기술 신청서 작성요령

## ▶ 신청 로그인 정보

☞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로그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## ▶ 신청회사정보

### ☞ 신청기관개요

- 회사명: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공식명칭을 기재
- 주식회사일 경우 (주)의 위치를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작성
- 대표자명: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전부 기재
- 본사주소: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,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일치
- 주생산품: 신청기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기재
- 자본, 연간매출, 수출액의 단위를 백만원으로 맞춰 작성
- 업종: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 기재
- 기업규모: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체크를 하고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구분

### ☞ 공동신청의 경우

- 공동신청기업 추가: 공동개발일 경우, 기간별로 회사정보 작성

## ▶ 업무담당자 정보

☞ **업무담당자:** 신기술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기술 및 행정 담당자를 작성하는 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협회와 연락이 가능한 분을 작성(업무담당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신청기관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유의)

## ▶ 신청 기술 정보

☞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신청서 자세하게 기재하고, 증빙 자료나 근거를 첨부하되 신청서에 핵심내용을 반드시 기재

☞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될 수 있음

- 기술명 형식: ~용 ~위한 ~기술

ex) 터치스크린용 고기능성 투명 양면 점착 필름 제조 기술

ex) 태양전지 유리용 반사 감소를 위한 텅스텐 함유 티타늄 코팅제 제조기술

ex) 소방용 공기호흡장치의 안전경보 시스템과 양압동작 공급밸브 제조기술

- 신청기술의 기술명은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 용어로만 표기

- 기존 기술이나 향후 개발 예상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

- 인증받고자 하는 핵심기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

- 신청하려는 기술이 각각 다른 2가지 이상일 경우, 기술에 따라 따로 작성

## ☞ 신청분과

- 반드시 개발기술의 분야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1개 정하여 신청

- 적용제품의 용도나 기능이 아닌 개발기술 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 신청

- 심사위원은 전문분과위원회별로 해당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되므로, 신청기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전공자의 전공분야를 고려 후 분과위원회 선택

## ☞ 제품명 및 모델명

- 신청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 될 예정인 제품명과 모델명 기재

ex) 적용제품명: 시스템에어컨(DVM PLUS I), 모 델 명: RVXVHT 140/120/100/080H1

## ☞ 기술핵심 단어

- 기술핵심 단어의 경우 신청기술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신청분과와의 적합성 및 심사위원 구성시 활용되므로 신청기술과 가장 잘 부합되는 단어로 작성

- 핵심단어표에서 4가지 선택

## ☞ 기술개발방법 및 개발인원

- 개발참여 인원 명시

☞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

☞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▶ **첨부자료**

☞ **신청기술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업로드. 제시된 항목을 준수하되 분량은 제한 없음(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작성요망)**

☞ **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반드시 첨부**

- 공동개발일 경우 참여한 모든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

☞ **산업재산권**

- 반드시 신청기술에 대한 특허·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제출(해당할 경우)

☞ **공동개발 또는 기술이전 증빙**

- 자체 개발이 아닌 공동연구개발 또는 기술이전 개발인 경우 그 증빙자료 (공동연구개발계약서, 기술이전 계약서)를 반드시 제출

☞ **ISO9001 또는 ISO/TS16949**

- 기간 만료되지 않은 국제표준기구(ISO)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ISO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기술의 적용제품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를 A4용지 3~4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

☞ **공인기관 시험성적서**

-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

-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, 없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자료 등의 인증자료 제출

---

## 신기술인증 문의

---

▶ **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(NET신기술인증 담당)**

☞ **02-3460-9023~4**